|  |  |  |
| --- | --- | --- |
| **민간대차 사건 심리의 법률적용**  **관련 몇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민간대차 사건 심리의 법률적용 관련 몇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이 2015년 6월 23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655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공표하는 바이며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최고인민법원  2015년 8월 6일  민간대차 분쟁 사건을 정확하게 심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중화인민공화국 담보법>,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심판업무 실천경험과 결부시켜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1조** 이 규정에서 민간대차라 함은 자연인, 법인, 기타 조직간에 및 그 상호간에 진행되는 자금융통 행위를 지칭한다.  금융감독관리부서의 비준을 거쳐 설립되어 대출업무에 종사하는 금융기구와 그 분지기구의 대출 등 관련 금융업무로 인해 발생한 분쟁은 이 규정의 관할을 받지 아니한다.  **제2조** 대출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차용증, 영수증, 채무확인서 등 채권증빙과 금전대차 법률관계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채권자가 명시되지 아니한 차용증, 영수증, 채무확인서 등 채권증빙을 소지한 당사자가 민간대차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해야 한다. 피고가 원고의 채권자 자격에 대해 사실근거가 있는 항변을 제출하였고 인민법원이 심리를 거쳐 원고가 채권자 자격을 구비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소송각하여 판정을 내린다.  **제3조** 대차 양 당사자가 계약이 행지에 대해 약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약정이 불명확하고 사후 보충합의도 달성되지 아니하였으며 계약의 관련 조항 또는 거래관습에 따라서도 확정할 수 없을 경우 화폐를 수령한 당사자의 소재지를 계약이행지로 한다.  **제4조** 보증인이 차입자를 위하여 연대책임 보증을 제공하였고 대출자가 차입자만을 피고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보증인을 공동피고로 추가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대출자가 보증인만을 피고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차입자를 공동피고로 추가할 수 있다.  보증인이 차입자를 위하여 일반 보증을 제공하였고 대출자가 보증인만을 피고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차입자를 공동피고로 추가해야 하며; 대출자가 차입자만을 피고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보증인을 공동피고로 추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인민법원은 입안 후 민간대차 행위 자체가 불법 자금모집 범죄에 연루된 혐의를 발견한 경우 소송각하 판정을 내림과 더불어 불법 자금모집 범죄 혐의와 연관된 단서, 자료를 공안 또는 검찰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공안 또는 검찰기관이 입건하지 아니하였거나 입건수사 후 사건을 취소하였거나 검찰기관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거나 인민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불법 자금모집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어 당사자가 다시 동일 사안으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접수해야 한다.  **제6조** 인민법원은 입안 후 민간대차 분쟁 사건과 연관성이 있으나 동일 사안이 아닌 불법 자금모집 등 범죄 혐의 단서, 자료를 발견한 경우 민간대차 분쟁 사건을 계속 심리함과 더불어 불법 자금모집 등 범죄 혐의 단서, 자료를 공안기관 또는 검찰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제7조** 민간대차의 기본 사건사실이 반드시 형사사건의 심리결과에 의거해야 하나 해당 형사사건의 심리가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 인민법원은 소송 중지(中止) 판정을 내려야 한다.  **제8조** 차입자가 범죄 혐의에 연루되었거나 유죄의 확정판결이 내려져 대출자가 담보인의 민사책임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접수해야 한다.  **제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법 제210조에 규정한 자연인간 대출계약의 효력발생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간주한다.  (1)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차입자가 차입금을 수령하는 시점;  (2) 은행계좌이체, 온라인계좌이체 또는 온라인 대출 플랫폼 이용 등 형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자금이 차입자의 계좌로 입금되는 시점;  (3)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차입자가 법에 따라 어음권리를 취득하는 시점;  (4) 대출자가 특정 자금계좌의 지배권을 차입자에게 수권하는 경우 차입자가 해당 계좌에 대한 실제 지배권을 취득하는 시점;  (5) 대출자와 차입자가 기타 방식으로 차입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약정이 실제로 이행 완료되는 시점.  **제10조** 자연인간의 금전대차계약을 제외하고 당사자가 민간대차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주장을 지지해야 한다. 단, 당사자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거나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법인간, 기타 조직간 및 법인과 기타 조직간에 생산, 경영 수요에 따라 체결되는 민간대차계약이 계약법 제52조, 이 규정 제14조에 규정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한 당사자가 민간대차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주장을 지지해야 한다.  **제12조**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본 업체 내부에서 금전대차계약의 형식으로 직원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본 조직의 생산, 경영에 사용하는 경우 계약법 제52조, 이 규정 제14조에 규정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한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민간대차계약 유효 주장을 지지해야 한다.  **제13조** 대출자 또는 차입자의 대차 행위가 범죄에 연루된 혐의가 있거나 범죄 구성의 확정판결이 내려진 상황하에서 당사자가 민사사송을 제기하는 경우 민간대차계약은 당연히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인민법원은 계약법 제52조, 이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민간대차계약의 효력을 판정해야 한다.  담보인이 차입자 또는 차입자의 대차행위가 범죄에 연루된 혐의가 있거나 범죄 구성의 확정판결이 내려졌다는 이유로 민사책임 불이행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민간대차계약과 담보계약의 효력, 당사자의 과실 크기에 따라 법에 의거하여 담보인의 민사책임을 확정해야 한다.  **제1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민간대차계약 무효 판정을 내려야 한다.  (1) 금융기구로부터 취득한 대출금을 고이자로 차입자에게 전대하였으며 차입자가 사전에 해당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응당 알고 있어야 하는 경우;  (2) 기타 기업으로부터 차입하였거나 본 업체의 직원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차입자게에 전대하여 이득을 취하였으며 차입자가 사전에 해당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응당 알고 있어야 하는 경우;  (3) 대출자가 대출금이 차입자의 불법·범죄 활동에 사용되는 것임을 사전에 알고 있거나 응당 알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출한 경우;  (4) 사회의 공서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5) 법률, 행정법규의 효력규정과 강제규정에 위배되는 기타의 경우.  **제15조** 원고가 차용증, 영수증, 채무확인서 등 채권증빙을 근거로 제기한 민간대차 소송에서 피고가 기초 법률관계에 대해 항변을 제출하였거나 반소를 제기하였고 증거를 제출하여 민간대차 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 분쟁이 아님을 증명한 경우 인민법원은 조사에서 밝혀진 사건의 사실을 근거로 기초 법률관계에 따라 심리해야 한다.  당사자가 조정, 화해 또는 청산을 통해 달성한 채권채무합의서는 전 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제16조** 원고가 차용증, 영수증, 채무확인서 등 채권증빙에만 의거하여 제출한 민간대차 소송에서 피고가 차입금을 상환했다고 항변하는 경우 피고는 증거를 제공하여 그의 주장을 증명해야 한다. 피고가 해당 증거를 제공하여 그의 주장을 증명한 후 금전대차 관계의 성립에 대한 거증·증명책임은 여전히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  피고가 금전대차 행위가 실제로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항변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대출금액, 대출금 지급, 당사자의 경제능력, 현지 또는 당사자간의 거래방식, 거래관습, 당사자의 재산 변동상황 및 증인의 증언 등 사실과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금전대차 사실의 발생 여부를 조사하고 판단해야 한다.  **제17조** 원고가 금융기구의 계좌이체 증빙에만 의거하여 제출한 민간대차 소송에서 해당 계좌이체가 양 당사자간의 기존 차입금 또는 기타 채무의 상환을 위한 것이라고 피고가 항변하는 경우 피고는 증거를 제공하여 그의 주장을 증명해야 한다. 피고가 해당 증거를 제공하여 그의 주장을 증명한 후 금전대차 관계의 성립에 대한 거증·증명책임은 여전히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  **제18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해석> 제174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거증·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출두를 거부하였고 기존 증거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금전대차 행위, 대출금액, 지급방식 등 사건의 주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인민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인민법원이 민간대차 분쟁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견된 경우 금전대차 발생원인, 시간, 장소, 자금출처, 지급방식, 자금흐름 및 대차 양 당사자의 관계, 경제상황 등 사실을 엄격히 심사하여 허위 민사소송에 속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1) 대출자가 분명히 대출능력을 구비하지 아니한 경우;  (2) 대출자가 소송 제기 시 의거한 사실과 이유가 일반적인 이치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3) 대출자가 채권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그가 제출한 채권증빙이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4) 양 당사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여러 차례의 민간대차 소송에 참가한 경력이 있는 경우;  (5) 일방 당사자 또는 양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출두 및 소송 참가를 거부하고 소송대리인의 금전대차 사실에 대한 진술이 불명확하거나 앞뒤의 진술이 서로 모순되는 경우;  (6) 양 당사자가 금전대차 사실의 발생에 대해 그 어떠한 쟁의 또는 논쟁이 없다는 점이 일반적인 이치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7) 차입자의 배우자 또는 동업자, 외부인의 기타 채권자가 사실 근거가 있는 이의를 제출한 경우;  (8) 당사자가 기타 분쟁에서 저가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  (9) 당사자가 부정당하게 권리를 포기한 경우;  (10) 허위 민간대차 소송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기타의 경우.  **제20조** 조사를 통해 허위 민간대차 소송임이 확인된 상항하에서 원고가 소송 취하를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그 신청을 허용하지 아니함과 더불어 민사소송법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  소송참가자 또는 타인이 악의적으로 허위소송을 조작하였거나 허위소송에 참가한 경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11조, 제112조 및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법에 의거하여 벌금을 부과하고 구금해야 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관할권이 있는 사법기관으로 이송하여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  업체가 악의적으로 허위소송을 조작하거나 허위소송에 참가한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업체에 벌금을 부과함과 더불어 그 주요 책임자 또는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구금해야 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관할권이 있는 사법기관으로 이송하여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  **제21조** 타인이 차용증, 영수증, 채무확인서 등 채권증빙 또는 금전대차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였으나 보증인 신분임을 또는 보증책임을 부담함을 명확히 표시하지 아니 하였거나 기타 사실을 통하여 그가 보증인임을 추정할 수 없는 상황하에서 대출자가 그의 보증책임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제22조** 대차 양 당사자가 온라인 대출 플랫폼을 통해 금전대차 관계를 형성하였고 온라인 대출 플랫폼 제공자가 매개 서비스만을 제공한 상황하에서 당사자가 온라인 대출 플랫폼 제공자의 담보책임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온라인 대출 플랫폼 제공자가 웹 페이지, 광고 또는 기타 매개를 통해 금전대차를 위한 담보의 제공을 명시하였거나 그가 금전대차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는 상황하에서 대출자가 온라인 대출 플랫폼 제공자의 담보책임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제23조** 기업의 법정대표인 또는 책임자가 기업의 명의로 대출자와 민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대출자, 기업 또는 기업의 주주가 해당 대출금이 기업 법정대표인 또는 책임자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상황하에서 대출자가 기업의 법정대표인 또는 책임자를 공동피고 또는 제3자로 추가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허용해야 한다.  기업의 법정대표인 또는 책임자가 개인의 명의로 대출자와 민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출금이 기업의 생산경영에 사용된 상황하에서 대출자가 기업과 개인의 연대책임 부담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제24조** 당사자가 매매계약의 체결을 민간대차계약을 위한 담보로 하고 대차계약 만기 후 차입자가 차입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어 대출자가 매매계약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민간대차 법률관계에 따라 심리해야 하며 소송 청구를 변경해야 함을 당사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당사자가 변경을 거절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소송 각하 판정을 내려야 한다.  민간대차 법률관계에 따라 심리하여 내려진 판결이 확정된 후 차입자가 확정판결에 의해 확정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출자는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한 매매계약 목적물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경매를 통해 취득한 대금과 대출금 원금·이자간의 차액에 대해 차입자 또는 대출자는 반환 또는 보상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  **제25조** 대차 양 당사자가 이자를 약정하지 아니한 상황하에서 대출자가 대출기간의 이자를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자연인간 금전대차의 이자에 대한 약정이 불명확한 상황하에서 대출자가 이자를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자연인간의 금전대차계약을 제외하고 대차 양 당사자의 대출이자에 대한 약정이 명확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대출자가 이자를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민간대차계약의 내용과 현지 또는 당사자의 거래방식, 거래관습, 시장금리 등 요인에 근거하여 이자를 확정해야 한다.  **제26조** 대차 양 당사자가 약정한 이자율이 연이자율 24%를 초과하지 아니한 상황하에서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약정에 따른 이자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대차 양 당사자가 약정한 이자율이 연이자율 36%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부분의 이자에 대한 약정은 무효하다. 차입자가 대출자에게 이미 지급된 연이자율 36% 초과 부분의 이자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제27조** 차용증, 영수증, 채무확인서 등 채권증빙에 기재된 대출금액은 보통 원금으로 인정한다. 원금에서 이자를 사전 공제한 경우 인민법원은 실제로 대출된 금액을 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  **제28조** 대차 양 당사자가 전 단계의 대출금 원금과 이자를 결산한 후 이자를 다음 단계의 대출금 원금에 산입하여 채권증빙을 새로 발행한 상황하에서 전 단계의 이자율이 연이자율 24%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새로 발해한 채권증빙에 기재된 금액을 다음 단계의 대출금 원금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초과 부분의 이자는 다음 단계의 대출금 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약정한 이자율이 연이자율 24%를 초과하는 상황하에서 당사자가 초과 부분의 이자를 다음 단계의 대출금 원금에 산입할 수 없음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전 항에 따라 계산할 때 차입자가 대출기간 만기 후 지급해야 하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최초의 대출금 원금과 최초의 대출금 원금을 기준으로 하여 연이자율 24%에 따라 계산한 총 대출기간의 이자와의 합계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초과 부분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제29조** 대차 양 당사자가 지연이자율을 약정한 경우 그 약정에 따르되 연이자율 24%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만 한한다.  지연이자율에 대한 약정이 없거나 또는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 인민법원은 상황을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다.  (1)대출기간의 이자율과 지연이자율을 모두 약정하지 아니한 상황하에서 대출자가 상환기한 경과일부터 연이자율 6%에 따라 자금점용기간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차입자에게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2) 대출기간의 이자율만 약정하고 지연이자율을 약정하지 아니한 상황하에서 대출자가 상황기한 경과일부터 대출기간의 이자율에 따라 자금점용기간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차입자에게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제30조** 대출자와 차입자가 지연이자율을 약정함과 더불어 위약금 또는 기타 비용도 약정한 경우 대출자는 지연이자, 위약금 또는 기타 비용 중의 일부만을 주장하거나 전부를 주장할 수 있으나 합계금액 중 연이자율 24%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제31조** 이자에 대한 약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입자가 자발적으로 이자를 지급하였거나 자발적으로 약정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 또는 위약금을 지급하였고 이러한 지급이 국가, 집단 및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상황하에서 차입자가 부당이득을 주장하면서 대출자에게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단, 차입자가 연이자율 36% 초과 부분의 이자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2조** 당사자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차입자는 대출금을 조기 상환할 수 있다.  차입자가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고 실제 대출기간에 따라 이자를 산정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제33조** 이 규정이 공표·시행된 후 1991년 8월 13일 최고인민법원이 발포한 <인민법원의 금전대차 사건 심리에 관한 몇가지 의견>은 동시에 폐지되며; 최고인민법원이 그 이전에 발포한 사법해석상 이 규정과 일치하지 않은 부분은 더 이상 적용하지 아니한다. |  | **最高人民法院**  **关于审理民间借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规定**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民间借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规定》已于2015年6月23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655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15年9月1日起施行。  最高人民法院  2015年8月6日  为正确审理民间借贷纠纷案件，根据《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中华人民共和国担保法》《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等相关法律之规定，结合审判实践，制定本规定。  **第一条** 本规定所称的民间借贷，是指自然人、法人、其他组织之间及其相互之间进行资金融通的行为。  经金融监管部门批准设立的从事贷款业务的金融机构及其分支机构，因发放贷款等相关金融业务引发的纠纷，不适用本规定。  **第二条** 出借人向人民法院起诉时，应当提供借据、收据、欠条等债权凭证以及其他能够证明借贷法律关系存在的证据。  当事人持有的借据、收据、欠条等债权凭证没有载明债权人，持有债权凭证的当事人提起民间借贷诉讼的，人民法院应予受理。被告对原告的债权人资格提出有事实依据的抗辩，人民法院经审理认为原告不具有债权人资格的，裁定驳回起诉。  **第三条** 借贷双方就合同履行地未约定或者约定不明确，事后未达成补充协议，按照合同有关条款或者交易习惯仍不能确定的，以接受货币一方所在地为合同履行地。  **第四条** 保证人为借款人提供连带责任保证，出借人仅起诉借款人的，人民法院可以不追加保证人为共同被告；出借人仅起诉保证人的，人民法院可以追加借款人为共同被告。  保证人为借款人提供一般保证，出借人仅起诉保证人的，人民法院应当追加借款人为共同被告；出借人仅起诉借款人的，人民法院可以不追加保证人为共同被告。  **第五条** 人民法院立案后，发现民间借贷行为本身涉嫌非法集资犯罪的，应当裁定驳回起诉，并将涉嫌非法集资犯罪的线索、材料移送公安或者检察机关。  公安或者检察机关不予立案，或者立案侦查后撤销案件，或者检察机关作出不起诉决定，或者经人民法院生效判决认定不构成非法集资犯罪，当事人又以同一事实向人民法院提起诉讼的，人民法院应予受理。  **第六条** 人民法院立案后，发现与民间借贷纠纷案件虽有关联但不是同一事实的涉嫌非法集资等犯罪的线索、材料的，人民法院应当继续审理民间借贷纠纷案件，并将涉嫌非法集资等犯罪的线索、材料移送公安或者检察机关。  **第七条** 民间借贷的基本案件事实必须以刑事案件审理结果为依据，而该刑事案件尚未审结的，人民法院应当裁定中止诉讼。  **第八条** 借款人涉嫌犯罪或者生效判决认定其有罪，出借人起诉请求担保人承担民事责任的，人民法院应予受理。  **第九条** 具有下列情形之一，可以视为具备合同法第二百一十条关于自然人之间借款合同的生效要件：  （一）以现金支付的，自借款人收到借款时；  （二）以银行转账、网上电子汇款或者通过网络贷款平台等形式支付的，自资金到达借款人账户时；  （三）以票据交付的，自借款人依法取得票据权利时；  （四）出借人将特定资金账户支配权授权给借款人的，自借款人取得对该账户实际支配权时；  （五）出借人以与借款人约定的其他方式提供借款并实际履行完成时。  **第十条** 除自然人之间的借款合同外，当事人主张民间借贷合同自合同成立时生效的，人民法院应予支持，但当事人另有约定或者法律、行政法规另有规定的除外。  **第十一条** 法人之间、其他组织之间以及它们相互之间为生产、经营需要订立的民间借贷合同，除存在合同法第五十二条、本规定第十四条规定的情形外，当事人主张民间借贷合同有效的，人民法院应予支持。  **第十二条** 法人或者其他组织在本单位内部通过借款形式向职工筹集资金，用于本单位生产、经营，且不存在合同法第五十二条、本规定第十四条规定的情形，当事人主张民间借贷合同有效的，人民法院应予支持。  **第十三条** 借款人或者出借人的借贷行为涉嫌犯罪，或者已经生效的判决认定构成犯罪，当事人提起民事诉讼的，民间借贷合同并不当然无效。人民法院应当根据合同法第五十二条、本规定第十四条之规定，认定民间借贷合同的效力。  担保人以借款人或者出借人的借贷行为涉嫌犯罪或者已经生效的判决认定构成犯罪为由，主张不承担民事责任的，人民法院应当依据民间借贷合同与担保合同的效力、当事人的过错程度，依法确定担保人的民事责任。  **第十四条** 具有下列情形之一，人民法院应当认定民间借贷合同无效：  （一）套取金融机构信贷资金又高利转贷给借款人，且借款人事先知道或者应当知道的；  （二）以向其他企业借贷或者向本单位职工集资取得的资金又转贷给借款人牟利，且借款人事先知道或者应当知道的；  （三）出借人事先知道或者应当知道借款人借款用于违法犯罪活动仍然提供借款的；  （四）违背社会公序良俗的；  （五）其他违反法律、行政法规效力性强制性规定的。  **第十五条** 原告以借据、收据、欠条等债权凭证为依据提起民间借贷诉讼，被告依据基础法律关系提出抗辩或者反诉，并提供证据证明债权纠纷非民间借贷行为引起的，人民法院应当依据查明的案件事实，按照基础法律关系审理。  当事人通过调解、和解或者清算达成的债权债务协议，不适用前款规定。  **第十六条** 原告仅依据借据、收据、欠条等债权凭证提起民间借贷诉讼，被告抗辩已经偿还借款，被告应当对其主张提供证据证明。被告提供相应证据证明其主张后，原告仍应就借贷关系的成立承担举证证明责任。  被告抗辩借贷行为尚未实际发生并能作出合理说明，人民法院应当结合借贷金额、款项交付、当事人的经济能力、当地或者当事人之间的交易方式、交易习惯、当事人财产变动情况以及证人证言等事实和因素，综合判断查证借贷事实是否发生。  **第十七条** 原告仅依据金融机构的转账凭证提起民间借贷诉讼，被告抗辩转账系偿还双方之前借款或其他债务，被告应当对其主张提供证据证明。被告提供相应证据证明其主张后，原告仍应就借贷关系的成立承担举证证明责任。  **第十八条** 根据《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的解释》第一百七十四条第二款之规定,负有举证证明责任的原告无正当理由拒不到庭，经审查现有证据无法确认借贷行为、借贷金额、支付方式等案件主要事实，人民法院对其主张的事实不予认定。  **第十九条** 人民法院审理民间借贷纠纷案件时发现有下列情形，应当严格审查借贷发生的原因、时间、地点、款项来源、交付方式、款项流向以及借贷双方的关系、经济状况等事实，综合判断是否属于虚假民事诉讼：  （一）出借人明显不具备出借能力；  （二）出借人起诉所依据的事实和理由明显不符合常理；  （三）出借人不能提交债权凭证或者提交的债权凭证存在伪造的可能；  （四）当事人双方在一定期间内多次参加民间借贷诉讼；  （五）当事人一方或者双方无正当理由拒不到庭参加诉讼，委托代理人对借贷事实陈述不清或者陈述前后矛盾；  （六）当事人双方对借贷事实的发生没有任何争议或者诉辩明显不符合常理；  （七）借款人的配偶或合伙人、案外人的其他债权人提出有事实依据的异议；  （八）当事人在其他纠纷中存在低价转让财产的情形；  （九）当事人不正当放弃权利；  （十）其他可能存在虚假民间借贷诉讼的情形。  **第二十条** 经查明属于虚假民间借贷诉讼，原告申请撤诉的，人民法院不予准许，并应当根据民事诉讼法第一百一十二条之规定，判决驳回其请求。  诉讼参与人或者其他人恶意制造、参与虚假诉讼，人民法院应当依照民事诉讼法第一百一十一条、第一百一十二条和第一百一十三条之规定，依法予以罚款、拘留；构成犯罪的，应当移送有管辖权的司法机关追究刑事责任。  单位恶意制造、参与虚假诉讼的，人民法院应当对该单位进行罚款，并可以对其主要负责人或者直接责任人员予以罚款、拘留；构成犯罪的，应当移送有管辖权的司法机关追究刑事责任。  **第二十一条** 他人在借据、收据、欠条等债权凭证或者借款合同上签字或者盖章，但未表明其保证人身份或者承担保证责任，或者通过其他事实不能推定其为保证人，出借人请求其承担保证责任的，人民法院不予支持。  **第二十二条** 借贷双方通过网络贷款平台形成借贷关系，网络贷款平台的提供者仅提供媒介服务，当事人请求其承担担保责任的，人民法院不予支持。  网络贷款平台的提供者通过网页、广告或者其他媒介明示或者有其他证据证明其为借贷提供担保，出借人请求网络贷款平台的提供者承担担保责任的，人民法院应予支持。  **第二十三条** 企业法定代表人或负责人以企业名义与出借人签订民间借贷合同，出借人、企业或者其股东能够证明所借款项用于企业法定代表人或负责人个人使用，出借人请求将企业法定代表人或负责人列为共同被告或者第三人的，人民法院应予准许。  企业法定代表人或负责人以个人名义与出借人签订民间借贷合同，所借款项用于企业生产经营，出借人请求企业与个人共同承担责任的，人民法院应予支持。  **第二十四条** 当事人以签订买卖合同作为民间借贷合同的担保，借款到期后借款人不能还款，出借人请求履行买卖合同的，人民法院应当按照民间借贷法律关系审理，并向当事人释明变更诉讼请求。当事人拒绝变更的，人民法院裁定驳回起诉。  按照民间借贷法律关系审理作出的判决生效后，借款人不履行生效判决确定的金钱债务，出借人可以申请拍卖买卖合同标的物，以偿还债务。就拍卖所得的价款与应偿还借款本息之间的差额，借款人或者出借人有权主张返还或补偿。  **第二十五条** 借贷双方没有约定利息，出借人主张支付借期内利息的，人民法院不予支持。  自然人之间借贷对利息约定不明，出借人主张支付利息的，人民法院不予支持。除自然人之间借贷的外，借贷双方对借贷利息约定不明，出借人主张利息的，人民法院应当结合民间借贷合同的内容，并根据当地或者当事人的交易方式、交易习惯、市场利率等因素确定利息。  **第二十六条** 借贷双方约定的利率未超过年利率24%，出借人请求借款人按照约定的利率支付利息的，人民法院应予支持。  借贷双方约定的利率超过年利率36%，超过部分的利息约定无效。借款人请求出借人返还已支付的超过年利率36%部分的利息的，人民法院应予支持。  **第二十七条** 借据、收据、欠条等债权凭证载明的借款金额，一般认定为本金。预先在本金中扣除利息的，人民法院应当将实际出借的金额认定为本金。  **第二十八条** 借贷双方对前期借款本息结算后将利息计入后期借款本金并重新出具债权凭证，如果前期利率没有超过年利率24%，重新出具的债权凭证载明的金额可认定为后期借款本金；超过部分的利息不能计入后期借款本金。约定的利率超过年利率24%，当事人主张超过部分的利息不能计入后期借款本金的，人民法院应予支持。  按前款计算，借款人在借款期间届满后应当支付的本息之和，不能超过最初借款本金与以最初借款本金为基数，以年利率24%计算的整个借款期间的利息之和。出借人请求借款人支付超过部分的，人民法院不予支持。  **第二十九条** 借贷双方对逾期利率有约定的，从其约定，但以不超过年利率24%为限。  未约定逾期利率或者约定不明的，人民法院可以区分不同情况处理：  （一）既未约定借期内的利率，也未约定逾期利率，出借人主张借款人自逾期还款之日起按照年利率6%支付资金占用期间利息的，人民法院应予支持；  （二）约定了借期内的利率但未约定逾期利率，出借人主张借款人自逾期还款之日起按照借期内的利率支付资金占用期间利息的，人民法院应予支持。  **第三十条** 出借人与借款人既约定了逾期利率，又约定了违约金或者其他费用，出借人可以选择主张逾期利息、违约金或者其他费用，也可以一并主张，但总计超过年利率24%的部分，人民法院不予支持。  **第三十一条** 没有约定利息但借款人自愿支付，或者超过约定的利率自愿支付利息或违约金，且没有损害国家、集体和第三人利益，借款人又以不当得利为由要求出借人返还的，人民法院不予支持，但借款人要求返还超过年利率36%部分的利息除外。  **第三十二条** 借款人可以提前偿还借款，但当事人另有约定的除外。  借款人提前偿还借款并主张按照实际借款期间计算利息的，人民法院应予支持。  **第三十三条** 本规定公布施行后，最高人民法院于1991年8月13日发布的《关于人民法院审理借贷案件的若干意见》同时废止；最高人民法院以前发布的司法解释与本规定不一致的，不再适用。 |